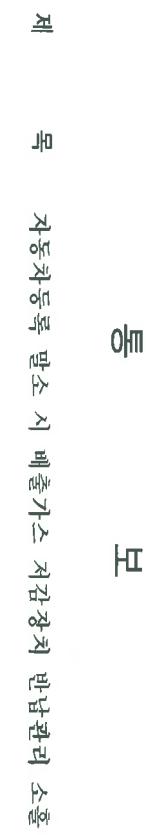


승인 없이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원

통

[그림 8] 배출기스 저감장치 반납 업무 구성도



자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료 재구성

제 목 차동차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권리 소홀  
소 관 청 환경부  
관 계 기 관 환경부  
내 용 환경부

환경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 단체의 DPF 등 저감장치<sup>1)</sup>의 반납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6조의10 등의 규정에 따르면 차주(車主)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차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반납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sup>2)</sup>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DPF 등을 장착 또는 탈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따라서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DPF 등의 반납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반납된 장치가 당초 보조금을 지원 받아 부착 또는 개조되었던 장치와 동일한지 확인한 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지원 받아 부착된 장치와 다른 장치가 반납되는 경우 불법 구조변경 및 저감장치 등의 탈거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5. 11. 26. ~ 12. 23.) 중 확인해 본 결과 [별표 4] “반납 장치 불일치 내역(2009~2015년)”과 같이 2009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에서 지원 받아 부착 또는 개조된 장치와 반납된 장치가 달라 불법개조 하였거나 탈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65대<sup>3)</sup>에 대하여 불법탈거 여부

의 조사 등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sup>4)</sup>.

그런데도 위 관서는 불법 구조변경 및 탈거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1) 부착 또는 교체된 DPF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 차량

2) 서울특별시장 등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2009. 1. 1. ‘장치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장치 반납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

3) 2014년까지 DPF가 총 423,714대 부착되었으며, 2009~2015년까지 7년간 218,278대 반납. 그 중 65대(총 반납 대수의 0.03%)는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장치관리업무를 수탁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반납된 장치가 부착된 장치와 달라 탈도로 관리하고 있던 목록임

4) 감사 기간에 이미 차동차가 폐차 또는 수출되어 살피기 없어 불법개조 등 위법사항을 확인 하자는 못이었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불법탈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의 목적과 달리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지

못하게 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장치 탈거 및

불법 구조변경이 조장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서술

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저감장치의 반납, 불법 구조변경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별표 4]

##### 반납장치 불일치 내역(2009~2015년)

연번	지동장번호	반납일	지원부록(※)증거	반납장치
1	-	2009. 10. 16.	3종(▽▽)	3종(-)
2	-	2009. 10. 16.	3종(▽▽)	3종(★★)
3	-	2009. 11. 16.	3종	3종(★★)
4	-	2009. 11. 19.	3종(-)	3종(-)
5	-	2009. 11. 30.	엔진개조(-)	엔진개조(-)
6	-	2011. 12. 1.	1종자연대형()	1종복합증형(-)
7	-	2012. 9. 4.	1종자연대형()	1종자연증형()
8	-	2012. 10. 10.	1종자연대형()	1종자연증형()
9	-	2013. 2. 19.	2종소형(▼▼)	2종소형(◆◆)
10	-	2013. 2. 26.	1종자연대형(▽)	1종복합증형(◆◆)
11	-	2013. 3. 4.	엔진개조(-)	- 순정축매
12	-	2013. 4. 1.	2종소형(-)	3종(-)
13	-	2013. 3. 29.	엔진개조(-)	엔진개조(-)
14	-	2013. 4. 29.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15	-	2013. 5. 20.	2종소형(▽▽)	2종소형(-)
16	-	2013. 5. 23.	엔진개조(-)	- 순정축매
17	-	2013. 5. 31.	1종자연대형(-)	1종자연증형(-)
18	-	2013. 6. 3.	엔진개조(-)	- 순정축매
19	-	2013. 6. 12.	엔진개조(-)	- 순정축매
20	-	2013. 6. 18.	3종(-)	3종(-)
21	-	2013. 7. 5.	3종(-)	3종(-)
22	-	2013. 7. 18.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23	-	2013. 7. 24.	3종(-)	3종(-)
24	-	2013. 9. 5.	1종자연대형()	자연대형()
25	-	2013. 9. 24.	3종(★★)	3종(-)
26	-	2013. 9. 25.	3종(-)	3종(★★)
27	-	2013. 10. 11.	2종증형(▽▽)	2종증형(-)
28	-	2013. 10. 23.	1종자연대형(★★)	자연증형(-)
29	-	2013. 11. 22.	1종자연대형(★★)	자연증형(-)
30	-	2013. 12. 5.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31	-	2013. 12. 18.	4 - 1종자연증형(★★)	1종복합증형(★★)

연번	자동차번호	반납일	지원부착기준 장치	반납장치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지원·부착
32	-	2014. 1. 20.	엔진기조(-)	엔진기조(-)	또는 개조된 장치를 불법 구조변경하거나 임의로 탈거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반납된 장치와 기존에 지원·부착된 장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33	-	2014. 2. 7.	1종자연증정(-)	1종복합증정(-)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반납된 장치가 기존에 지원·부착된 장치와	
34	-	2014. 2. 7.	1종자연증정(-)	1종복합증정(-)	상이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 및 탈거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5	-	2014. 2. 7.	1종자연증정(-)	1종복합증정(-)		
36	-	2014. 3. 25.	3종(-)	엔진기조(-)	등록 말소 시 반납된 장치와 기존에 지원·부착된 장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37	-	2014. 4. 28.	엔진기조(-)	- 순정속매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반납된 장치가 기존에 지원·부착된 장치와	
38	-	2014. 4. 30.	엔진기조(-)	- 순정속매	상이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 및 탈거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9	-	2014. 4. 30.	엔진기조(-)	- 순정속매		
40	-	2014. 5. 2.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41	-	2014. 5. 12.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42	-	2014. 5. 14.	1종자연증정(-)	1종복합증정(◆◆)		
43	-	2014. 6. 16.	1종자연증정(-)	1종복합증정(◆◆)		
44	-	2014. 7. 25.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45	-	2014. 9. 4.	1종복합증정(◆◆)	1종복합증정(★★)		
46	-	2014. 9. 25.	3종(-)	엔진기조(-)		
47	-	2014. 10. 1.	엔진기조(-)	엔진기조(-)		
48	-	2014. 10. 6.	2종증정(-)	2종증정(★★)		
49	-	2014. 10. 6.	엔진기조(★★)	- 순정속매		
50	-	2014. 10. 13.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51	-	2014. 10. 22.	2종소형(-)	2종소형(-)		
52	-	2014. 11. 6.	2종증정(★★)	2종증정(-)		
53	-	2015. 1. 26.	엔진기조(-)	엔진기조(-)		
54	-	2015. 1. 29.	1종자연대형(-)	1종자연대형(-)		
55	-	2015. 2. 24.	1종자연대형(★★)	1종복합대형(★★)		
56	-	2015. 4. 7.	엔진기조(-)	- 순정속매		
57	-	2015. 5. 8.	엔진기조(◀◀)	엔진기조(-)		
58	-	2015. 5. 8.	엔진기조(◀◀)	엔진기조(-)		
59	-	2015. 5. 8.	엔진기조(◀◀)	엔진기조(-)		
60	-	2015. 5. 8.	엔진기조(-)	엔진기조(-)		
61	-	2015. 5. 15.	3종(-)	3종(-)		
62	-	2015. 7. 30.	2종증정(★★)	2종소형(★★)		
63	-	2015. 8. 26.	엔진기조(-)	- 순정속매		
64	-	2015. 10. 12.	2종소형(-)	- (2종소형)		
65	-	2015. 10. 22.	2종증정(★★)	2종소형(★★)		

주: 김사일 협재 위 자동차들은 이미 폐차되어 실물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인  
불법률거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음